

대의원 선거규정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규정

【 제정 2003. 10. 】

【 개정 2008. 9. 3 】

【 개정 2011. 3. 22 】

【 개정 2016.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위촉된 9인 이내의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6.11.29.>
4.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출구별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지역축협)의 조합장(또는 조합장이 위촉하는 직원. 이하 같음.)과 협회의 지부장(또는 지부장이 위촉하는 직원)이 협의하여 구성하여 각종 투개표 업무를 총괄한다. 단, 협회의 지부(회)장이 없는 선출구에서는 지역축협의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6.11.29.>
5.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한다.<개정 2016.11.29.>

제3조(적용범위)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한 전 한 우사육농가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연기명으로 하며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1항에 의한 인근 선거구와 병합된 시.군.구 중 50농가 미만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②투표는 직접투표로 하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한다.

제6조(선출구) ①선출구는 시.군단위(광역시는 시단위)로 설치하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은 시.군단위는 인근 선거구와 병합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2>

②선출구별 대의원수는 한우사육업자의 수와 한우 사육마리수를 각각 50%의 비율로 산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개정 2016.11.29.>

③제 2항의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축사육두수조사결과에 의한 선거인의 사육두수가 공란인 경우에는 영(0)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7조(선거일) ①대의원 선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로부터 4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한다.<개정 2011.3.22>

②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한다.<개정 2008. 9. 3>

③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2절 선거관리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장은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구별 축산단체의 직원중에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한다.<개정 2011.3.22>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선거관리위원회장이 소속된 단체와 당해 단체장 선거시 사용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1.3.22>

제3절 선거인

제11조(선거인명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일로부터 35일 전까지 선거구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②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한우사육두수,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④선거인은 비치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30일전부터 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⑤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될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1. 선거인명부 누락자 및 오기정정
2. 타축종으로 확인된 농가명 정정
3. 사육두수 오기 정정

⑦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한우농가가 선거권을 요청할 때에는 증빙서류(쇠고기생산이력제에 등록된 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선거권을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4절 선거공지

제12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선출구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대의원의 수
2. 선거인 및 피선거권자
3.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기간
4. 투표일시 및 장소(유효투표수 미달시 선거일 연장에 관한 사항)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선거일시 및 장소, 선거구별 선출 대의원수, 투표절차, 선거계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선거인에게 발송 또는 선출구 축산단체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제5절 후보자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대의원후보자는 선거공고 일 현재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한우사육업자로 하되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개정 2016.11.29.>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구별 투표소에 후보자등록창구를 설치한다.

②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익일부터 3일간으로 하되 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보다 적을 경우 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신청)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소정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등록창구에 별지서식 2호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3호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3.22>

④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5호에 의거 선거구별 투표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7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등록마감일 익일에 후보자의 참여하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6절 선거운동

제18조(공명선거 서약서)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 7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투표

제19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지역축협과 한우협회 지부 사무실 중 투표관리가 편리하고 선거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축산단체에서는 선거당일 투표율제고를 위하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3.22>

20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미리 출입을 허용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

할 수 없다.<개정 2011.3.22>

제21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구별로 축산단체에서 각 1명~3명씩 추천하며 선거구별 사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1.3.22>

②후보자는 투표, 개표를 참관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④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⑥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2조(투표함의 준비) 투표함의 수는 1개의 선거구에 1개로 하되 병합된 선거구의 경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추가로 투표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2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

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9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4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사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선거구별 선출대의원의 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5조(개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잔여 투표용지, 번호지, 기타 투표관계 서류와 함께 개표소로 송부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난 즉시 선거인명부에 의거 유효투표수의 총족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유효투표수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개함하지 아니하고 봉인된 상태로 투표함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우사육농가의 과반수 또는 선거구안에서 사육하는 한우 마리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육하는 한우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개표관리 주관) ①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②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축산단체의 참관인이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제27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장

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8조(개표결과 집계) ①선거관리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투표함에 한하여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개함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0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한다.

제29조(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 종사 요원은 선거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한다.<개정 2011.3.22.>

제30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1조(무효투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상에 "⊗"표를 한 경우
2.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2조(당선인 결정) ①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3.22>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투표시 선출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3조(당선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축산단체의 별지서식 제 11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2016.11.29>

제10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4조(선거일연장) ①유효투표수가 미달된 선거구에 한하여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미리 공고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전일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표함은 유효투표

수 미달로 개함하지 아니하였던 투표함을 개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한다.

제35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투표구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대의원정수의 3/4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때

2. 자격이 없는 자임이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②대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사망하거나 대의원자격 상실로 궐위 되었을 때는 자조금관리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대의원의 수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 9. 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3.22>

제 11절 선거비용의 처리

제36조(선거비용의 처리) 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개최에 소요될 총 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선거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선거에 따르는 비용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12절 기록보존

제37조(투표지보전)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 및 관련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1.3.22>

제2조(최초의 대의원 선거비용) <삭제 2011.3.22>

[서식 제 1 호]

선 거 공 고

한우자조금 설치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출구명 및 선출대의원수 : ○○○○선출구(선출대의원수 : 명)
2. 선 거 인 :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한우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3. 선 거 일 : 20 년 월 일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우농가의 과반수 이상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한우마리수의 3분의 2이상을 사육하는 한우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선거일을 연장한다.
4. 피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5. 후보등록접수장소 :
6. 투표개시 및 종료시각 : 선거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7. 투표소 위치 :
8. 개표소 위치 :
9. 후보등록기간 : 20 년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기간은 공고일 익일부터 3일간으로 하되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보다 후보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3일간 연장한다.)
10. 등록절차 :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함.
11. 선거인명부열람 : 20 년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장소 :)
12.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에 문의바람(Tel)

20 년 월 일

○○○○선출구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서식 제 2 호]

대 의 원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 ○

○ ○ ○ ○ 선출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명함판) 2장

[서식 제 3 호]

대의원 후보자 등록부

신청 일시	신청인		심사결과		접수확인				접수증 계인	비고
	성명	주소	적	부	일자	번호		위원장		

- 주 : 1. 접수번호란은 적격자만 일련번호 부여
2. 비고란은 반환사유, 등록취소, 보완조건 및 시한 등을 기재

[서식 제 4 호]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취소됨.

나. 등록마감일 다음날 ○시에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200 년 월 일

○ ○ ○ ○ 선출구
선거관리위원장 ○ ○ ○

주 : 제3항의 접수조건은 조건부 접수일 경우에 그 조건을 기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시는
'없음'이라 표시한다.

[서식 제 5 호]

공 고 제 호

대의원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대의원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주 : 1. 접수증번호 순서대로 기재한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년 월 일

○ ○ ○ ○ 선출구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서식 제 6 호]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선출구의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추첨일시 :
2. 추첨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선거관리위원장 (인)

주 : 불참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대리 추첨하고 날인란에 대신 날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명기함.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대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제14조, 제16조 후보자의 자격) 결과 대의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등 여하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표지면)

20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설치 대의원 선거
선거공보

○○○○ 선출구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면)

명함판
(5X7cm)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만 세)

기호 번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 선거인께서 투표하실 ○○○○선출구는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1명의 선거인이 1장의 투표용지에 ○개까지 기표가 가능함
3. 당부사항
 - 투표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시기 바람
 - 선거인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도 권유하여 주시기 바람
4. 기타사항
 -

투 표 용 지

The diagram shows a ballot paper template with a total width of 12cm and a total height of 22cm or less. The top section is 5cm high and contains a 'No.' field (4cm wide), a dashed line for '선' (candidate), and two boxes: 'OOOO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and '선거종사요원 생'.

The bottom section is 11cm wide and contains a table of candidates. The table has 3 columns: '기 호' (No.), '성 명' (Name), and '기 표 란' (Marking box). The table height is 2~3cm. Margins are 0.5cm on the left and right, and 0.5cm at the bottom.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李 夢 龍)	
4	심 청 (沈 淸)	
5	김 만 중 (金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 주 : 1. “No”는 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를 기입
 2. 세로는 22cm 이내에서 후보자 수에 따라 줄일 수 있음.
 3.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체 조제하여 사용
 4. 투표용지는 투시되지 않는 것을 이용

[서식 제 10 호]

수신 :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발신 : ○○○○선거관리위원장 (인)

○ ○ ○ ○ 선출구 개표결과 집계표

선거인명부		투표참가자 (유효투표수 확인란)		개표결과							비고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투표율)	사육두수 (투표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명	두	명 (%)	두 (%)											

- 주 : 1. 선거인명부 대비 투표참가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거나 투표참가자의 사육두수가 ⅔이상이 되어야 해당 선출구의 선거가 유효하게됨
 2. 투표참가자의 농가수와 개표결과와의 합계는 일치되어야 함
 3. 개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은 공동준비위원회로 보고

[서식 제 11 호]

당 선 통 지 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 ○ 선출구
선거관리위원장(인)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 선거규정 제정

【 개정 2016.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대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29>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의장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 의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 ①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의 다른 선거와 중복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6.11.29>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2조(선거공고) 자조금 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15조(후보자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추천서 10부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3.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마감일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17조(공명선거 서약서) 의장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투표

제18조(투표소의 설치)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0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에 대해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7절 개표

제22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23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24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5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27조(무효투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

- 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8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28조(당선인 결정 및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대의원회에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서식 제 12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절 재선출

제29조(재선출)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대의원 의장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7조에 의거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00:00
3. 후보자 등록 :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 사무국에 등록 완료
 - 등록기간 : 20 . . () ~ ()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대 의 원 의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의원 의장 선거에 있어 대의원
의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판) 2장

[서식 제 4 호]

대의원 의장 후보자 등록부

연 번	신 청 일 시	신 청 인			접 수 확 인		접수증 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연락처	선거종사원	위원장		

[서식 제 5 호]

대의원 의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6 호]

공고 제 호

대의원 의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대의원 의장 선거에 있어 의장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7 호]

대의원 의장 후보자 기호 추천조서

대의원 의장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추천일시 :
2. 추천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천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천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주 : 불참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대리 추천하고 날인란에 대신 날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명기함.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대의원 선거규정 제15조) 결과 의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등 여하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면)

반명함판
(3X4cm)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만 세)

기호 번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서식 제 10 호]

투 표 용 지

The diagram shows a ballot paper with a total width of 12cm and a total height of 22cm or less. At the top, there are two boxes: one for the Chairman of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12cm wide, 5cm high) and one for the Election Officer (5cm wide, 5cm high). Below these is a table with 6 rows and 3 columns. The table has a total width of 11cm, with margins of 0.5cm on the left and right. The columns are 2cm, 6cm, and 3cm wide respectively. The table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李 夢 龍)	
4	심 청 (沈 淸)	
5	김 만 중 (金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서식 제 11 호]

대의원 의장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명	(명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2 호]

대의원 의장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거관리위원장(인)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제정

【개정 2016. 11. 29】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구성)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8호까지 선정된 관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법 제15조제1항1호에 의거 대의원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관리위원 배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1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도별 관리위원의 배분기준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거시 조사한 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하여 도별 관리위원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각 도별 대의원회는 제2항에서 결정된 도별 대의원수를 바탕으로 각 도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제7조(선거방법) ①관리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9>

1. 각 도별 관리위원 후보자는 해당 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 2항 내지 3항에 따라 도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위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할 수 있다.

3. 각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투표하되 후보자 수가 많이 추천된 도만 투표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할 때에는 궐위된 도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선거일) 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

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4조(선거관리 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5조(선거공고) 자조금 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 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5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7조(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 <개정 2016.11.29>

제18조(후보자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마감일 6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추천서 5부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2.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 까지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9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접수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0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 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투표

제21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0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4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도별 배분된 관리위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7절 개표

제25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26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27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8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0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8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1조(당선인 결정 및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대의원회에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제 12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절 재선출

제32조(재선출) <삭제> <개정2016.11.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관리위원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13조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00:00
3.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관 리 위 원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판) 2장

[서식 제 5 호]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
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6 호]

공 고 제 호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관리위원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7 호]

관리위원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일시 :
2. 장소 :
3.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인)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관리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 결과 관리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 등 여하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서식 제 9 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면)

반명함판
(3X4cm)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만 세)

기호 번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서식 제 10 호]

투 표 용 지

The diagram shows a ballot paper layout with a total width of 12cm and a total height of 22cm or less. At the top, there are two boxes: one for the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Chairman Seal) and another for the '선거종사요원 (인)' (Election Staff Seal). Below these is a table with 6 rows and 3 columns. The table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李 夢 龍)	
4	심 청 (沈 淸)	
5	김 만 중 (金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Dimensions: Total width 12cm, total height 22cm or less. Top boxes are 5cm high. The table area is 11cm wide and 16.5cm high (22cm total height minus 5.5cm for top boxes and margins). Margins: 0.5cm on the left and right, 2cm on the top left, 6cm on the top middle, and 3cm on the top right.

관리위원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명	(명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2 호]

관리위원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인)

[1]

관리위원 배분기준

$$\begin{aligned} \text{관리위원 수} = & \frac{\text{도별 축산업자 수}}{\text{체 축산업자 수}} \times \text{선출직 관리위원 총수} \times 0.5) \\ & + \left(\frac{\text{도별 가축사육 마릿수}}{\text{전체 가축사육 마릿수}} \times \text{선출직 관리위원 총수} \times 0.5) \end{aligned}$$

: 도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도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6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어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29>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장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장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 ①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2조(선거공고) 자조금 사무국에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15조(후보자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추천서 10부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3.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선거공지 후 5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마감일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17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장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투표

제18조(투표소의 설치)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0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

인에 대해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7절 개표

제22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23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24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5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2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8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28조(당선인 결정 및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대의원회에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제 12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절 재선출

제29조(재선출)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관리위원장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12조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00:00
3. 후보자 등록 :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 사무국에 등록 완료
 - 등록기간 : 20 . . () ~ ()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관 리 위 원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판) 2장

[서식 제 4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부

연번	신청 일시	신 청 인			접 수 확 인		접수증 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연락처	선거종사원	위원장		

[서식 제 5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
첨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6 호]

공고 제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7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기호 추천조서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추천일시 :
2. 추천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천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천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주 : 불참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대리 추천하고 날인란에 대신 날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명기함.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관리위원장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결과 관리위원장으로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등 여하의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서식 제 9 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면)

기호 번

반명함판
(3X4cm)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서식 제 10 호]

투 표 용 지

The diagram shows a ballot paper with a total width of 12cm and a total height of 22cm or less. At the top, there are two boxes: one for the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Chairman Seal) and another for the '선거종사요원 (인)' (Election Staff Member Seal). Below these is a table with 6 rows and 3 columns. The table headers are '기 호' (No.), '성 명' (Name), and '기 표 란' (Marking Area). The names listed are 홍길동, 성춘향, 이몽룡, 심청, 김만중, and 박이윤. Dimensions are provided for various parts: 12cm total width, 5cm for the top boxes, 11cm for the table area, and specific margins of 0.5cm, 2cm, 6cm, and 3cm.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李 夢 龍)	
4	심 청 (沈 淸)	
5	김 만 중 (金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서식 제 11 호]

관리위원장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명	(명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2 호]

관리위원장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감사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감사”이라 함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사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감사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감사 구성 및 선거방법) ①감사의 구성 및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감사 2명을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입후보자수가 감사 인원 수보다 많은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출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3. 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구성된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

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한다.

④당선자 결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제 8조에 준한다.

⑤감사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의원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에 중복 출마할 수 없으며, 기존에 대의원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의 직을 수행 중인 자는 당선 후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일) ①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6.11.29>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2조(선거공고) 자조금 사무국에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의 기호결정) <삭제> <개정 2016.11.29>

제13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

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 및 경력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29>

제4절 후보자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8. 한우자조금 위탁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횡령 및 유용, 용도 외 사용, 부정사용 등으로 감사(내부감사,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위탁사업자금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 당한 자

9. 한우사육을 폐업한 자(자진폐업 및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자)
10. 본인 명의의 축산업등록증(한우)이 없는 자.
11. 축산물이력제 상 본인 명의의 한우가 없는자. 다만, 본인 명의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축질병·방역 또는 농장 이전 등 경영상 이유로 1년 이내로 사육을 중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거소 또는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자.<본조신설 2016.11.29.>

제15조(후보자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추천서 10부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되, 감사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에 중복 출마할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3.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며, 당선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마감일의 마감시간은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본조신설 2016.11.29>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9>

제5절 선거운동

제17조(공명선거 서약서) 감사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4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투표

제18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4인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5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감사인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7절 개표

제22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23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24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5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27조(무효투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8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28조(당선인 결정 및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대의원회에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제 7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절 재선출

제29조(재선출) ① 감사의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이거나 2명 이상이 결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감사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10조에 의거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00:00
3. 후보자 등록 :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 사무국에 등록 완료
 - 등록기간 : 20 . . () ~ ()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감 사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감사 선거에 있어 감사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판) 2장

[서식 제 5 호]

감사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감사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6 호]

공고 제 호

감사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감사 선거에 있어 감사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7 호]

감사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감사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추첨일시 :
2. 추첨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대의원회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결과 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등 여하의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대의원 감사 선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면)

기호 번

반명함판
(3X4cm)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서식 제 10 호]

투 표 용 지

The diagram shows a ballot paper with a total width of 12cm and a total height of 22cm or less. At the top, there are two boxes: one for the election supervisor (2cm wide) and one for the election clerk (3cm wide). Below these is a table with 6 rows and 3 columns. The table columns are labeled '기 호' (Serial Number), '성 명' (Name), and '기 표 란' (Marking Area). The names listed are 홍길동, 성춘향, 이몽룡, 심청, 김만중, and 박이윤. Dimensions are indicated: 12cm total width, 5cm for the top boxes, 11cm for the table area, and 0.5cm margins. The table row heights are 2cm, 6cm, 3cm, 0.5cm, 0.5cm, and 0.5cm respectively.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길동 (洪吉童)	
2	성춘향 (成春香)	
3	이몽룡 (李夢龍)	
4	심청 (沈淸)	
5	김만중 (金萬重)	
6	박이윤 (朴伊潤)	

감사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명	(명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2 호]

감사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감사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인)